2007 년 9 월 1 일 발효

파트 B 절차적 보호 통지문

뉴욕주 교육부
절차적 보호 통지문

3-21 세의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님께서는 뉴욕주 특수교육 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CSE) 또는 유아특수교육 위원회(Preschool Special Education: CPSE)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CSE/CPSE 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특수교육 필요성 여부에 관한 CSE/CPSE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방 및 뉴욕주 법에 따라 특수교육 과정에 관하여 통지를 받고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자녀가 적절한 무상 공교육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의 법적 권리인 절차적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절차적 보호 통지문은 학부모님께 반드시 연 1 회 및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자녀의 교육문제에 관한 첫 추천 시 또는 학부모의 평가 신청 시
- 언제든 학부모가 사본을 요청할 시
- 학년도에 중재 또는 공정한 심의를 요청하는 최초의 적법절차 이의신청 접수 시
- 학년 중 처음으로 학부모가 뉴욕주 교육부(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YSED)에 제출한 뉴욕주 이의 신청서 사본이 학군에 접수 될 때
- 징계 사유로 인해 자녀의 정학 또는 이동 결정이 내려지고, 그 징계에 따른 결과로 배정에 변경이 있을 시

본 절차적 보호 통지문은 미국 교육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USDOE)가 개발한 표준 양식을 채용한 것으로 뉴욕주의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
뉴욕주 교육부
장애인 직업 및 교육 서비스 담당실

2007 년 9 월 1 일 발효

목 차

일반적인 정보 1
사전 통지문 (권고 통지문) 1
모국어 2
이메일 3
학부모의 동의 – 정의 3
학부모의 동의 4
독립교육평가 8
정보의 기밀유지 11
정의 11
개인신상 정보 11
학부모 대상 통지문 12
열람권 12
열람 기록 13
1 명 이상의 학생에 관한 기록 13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14
수수료 14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의 수정 14
심의 기회 15
심의 절차 15
심의 결과 15
개인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16
보호조치 16
정보의 파기 17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 18
적법절차 심의 이의신청과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의 차이 18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의 채택 18
최소한의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 19
이의신청서 제출 21
적법절차 이의신청 절차 23
적법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23
적법절차 이의신청 24
견본 양식 26
중재 27
적법절차 이의신청 및 심의 계류 중 아동의 배정 (미결) 29
분쟁해결 과정 30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3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 33
심의권 34
심의 결정 36
항소 38
최종 결정; 항소; 공정한 재심 38
심의 및 재심의 시한 및 편의 39
소송 제기 기간을 포함한 민사소송 40
변호사 비용 42
장애학생의 징계절차 45
교직원의 권한 45
징계상 이동조치로 인한 배정 변경 50
배경에 대한 판단 51

항소 51
항소 중의 배정 53
현재까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보호 53
법 집행 및 사법 기관으로의 위탁 및 조치 54
공공 및 개인 복지혜택/보험의 이용 56
공공보험이 적용되는 장애학생 56
민영 보험이 적용되는 장애학생 57
학부모의 요구로 공공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요건 58
일반사항 58
자료원 60

일반적인 정보

사전 통지문 (권고 통지문)

34 CFR 300.503 항; 8 NYCRR 200.5 항(a) 및 (c)

통지문

학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언제나 통지문(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을 학부모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1. 학군이 자녀의 신원확인, 평가 또는 교육적 배정, 또는 FAPE의 제공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도록 제안할 때, 또는
2. 학군이 자녀의 신원확인, 평가 또는 교육적 배정, 또는 FAPE의 제공을 개시하거나 변경을 거절할 때

학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학군의 조치를 기술한 사전 통지문이 발송되는 경우, 학군은 학부모의 동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통지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통지문의 내용

통지문은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학교 학군이 제안 또는 거부한 조치의 설명
2. 학군이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이유 설명
3. 학군이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하기로 결정할 때 이용한 각각의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 설명.
4. 장애인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5. 학군이 제안하거나 거절하려는 조치가 첫 평가 추천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학부모가 절차적 보호 통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 안내
6. IDEA 의 파트 B 를 이해하기 위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
7. 자녀의 특수교육 위원회(CSE) 또는 유아특수교육 위원회(CPSE)가 고려한 다른 선택방안 또는 해당 선택방안이 거부된 이유, 및
8. 학교 학군이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기타 이유

이해 가능한 언어로 통지

통지문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특별히 불가능하지 않는 한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학부모가 사용하는 대화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대화수단이 문어가 아닌 경우, 학군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통지문이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대화수단으로 구두 번역되었는지의 여부
2. 학부모가 통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상기 1 항 및 2 항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증거 보유 여부

모국어

34 CFR 300.29 항; 8 NYCRR 200.1 항(ff)

영어 구사에 한계가 있는 개인의 경우, 모국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개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동인 경우 그의 부모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2. 아동과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 시 (아동에 대한 평가 포함),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아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가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경우, 대화수단은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

이메일

34 CFR 300.505 항; 8 NYCRR 200.5 항 (a), (f) 및 (i)

학군이 학부모에게 이메일 문서 수신 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사전 서면 통지문 (권고 통지문)
2. 절차적 보호 통지문, 및
3. 적법절차 이의제기 관련 통지문

학부모의 동의 – 정의

34 CFR 300.9 항; 8 NYCRR 200.1 항(l)

동의

동의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기타 대화수단(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으로 학부모가 동의하는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보 받았음
2. 학부모가 해당 조치를 이해하고 서면으로 허락하며, 동의서에는 해당 조치 내역과 (해당되는 경우) 공개될 기록 및 공개 대상자가 열거됨, 그리고
3. 동의는 학부모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항시 동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

동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를 철회하기 전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동의

34 CFR 300.300 항; 8 NYCRR 200.5 항(a) 및 (b)

최초 평가를 위한 동의

학군은 학부모에게 제안된 조치를 사전 서면통지하고 **학부모의 동의**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자녀가 IDEA 파트 B 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적용 대상자인지 판단하기 위한 최초 평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학군은 자녀가 장애학생인지를 결정하는 최초 평가를 위한 학부모의 허락을 얻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초 평가에 동의하였다하여도 이것으로 학부모가 또한 학교 학군에서 자녀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시행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공립학교에 등록 혹은 등록을 준비 중에 학부모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최초 평가를 위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자녀가 취학 연령에 도달한 경우, 학군은 조정 또는 적법절차 이의신청, 분쟁해결 회의, 그리고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 절차를 활용하여 학생에 대한 최초 평가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수행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군이 학생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재파악, 신원확인 및 평가수행이라는 학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학생이 적격자였다고 할지라도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 정부의 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초평가 특별규정

학생이 주 정부의 보호 대상자이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학군은 장애학생 여부를 판단하는 최초 평가를 위해 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 합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학생의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부모의 권리가 주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u>또는</u>

3. 판사가 교육에 대한 결정권 및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권을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 경우

뉴욕주에서 주 정부의 보호대상자란 IDEA 에 사용된 경우와 같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연령 21 세 미만의 학생 또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법(Social Service Law) 358-a, 384 또는 384-a 항, 또는 가정법원법(Family Court Act) 3, 7 또는 10 조에 따라 배속 또는 수용되었거나, 사회복지법 383-c, 384 또는 384-b 항에 따라 입양이 면제된 경우
2. 사회복지 감독관또는 아동 및 가정 복지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3. 사회복지법 398(1)항에 속하는 빈곤층 자녀일 경우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

학군은 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7/8월 중 학생이 처음으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군은 학생에게 처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학부모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받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동의 요청에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군은 학부모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적법절차 (즉, 조정, 분쟁해결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학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CSE 또는 CPSE가 권장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처음으로 제시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동의서 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학군이 학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해당 학부모의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1. 학군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FAPE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u>또한</u>

2. 학군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CSE 회의 및 개별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평가를 위한 학부모의 동의

다음의 내용을 학군이 증명하지 않는 한, 학군은 학생을 재평가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학군이 재평가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음, **그리고**
2.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았음

학부모가 자녀의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군은 조정, 적법절차 이의신청, 분쟁해결 회의, 그리고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 절차를 이용하여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거부를 무효화함으로써 자녀의 재평가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재평가의 의무는 없습니다. 최초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군이 이러한 방법으로 재평가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IDEA 파트 B 에서 규정하는 학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 대한 증거자료

학군은 최초 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최초 평가를 위해 주 정부의 보호대상자 부모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이 학군이 기울인 노력의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전화 통화나 통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2. 학부모에게 발송된 통신문 및 학부모로부터의 답신
3. 학부모의 집이나 직장 방문 및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보험 이용을 위한 학부모 동의

공공 및 개인 혜택/보험의 활용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학군이 부모의 개인 또는 공공 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및 가정 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동의

자비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거나 홈 스쿨로 가르치면서 자녀의 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학군은 부모 동의 무효화 절차(즉, 조정, 적법절차 이의신청, 분쟁해결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를 이용할 수 없고 자녀가 특수교육 서비스 수혜 대상자인지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동의 요건

다음과 같이 학군이 조치를 취할 때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자녀의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u>또는</u>
2. 시험 또는 평가가 모든 학생의 모든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있는 경우아닌 경우에 시험 또는 기타 평가를 학생에게 치루도록 할 때

학군은 학부모가 특정 서비스 또는 활동의 동의를 거부했다고 해서 자녀의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가 다른 서비스 및 활동의 동의를 거부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FAPE 가 제공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군은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독립교육평가

34 CFR 300.502 항; 8 NYCRR 200.5 항(g)

일반

아래에서 기술하듯이, 학군이 시행한 자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는 자녀의 독립교육 평가(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EE)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가 IEE 를 요청하면, 학군은 IEE 를 받을 수 있는 장소와 IEE 에 적용되는 학군의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의

독립교육 평가란 학생 교육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학군의 직원이 아닌 자격을 갖춘 제 3 의 시험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공공비용이란 학군이 일체의 평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IDEA 파트 B 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평가를 시행하도록 보장함을 의미하며, 이 조항에 따라 각 주는 IDEA 파트 B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주, 지역, 연방 또는 민간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비용을 이용한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

학군이 시행한 자녀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생은 다음 조건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IEE 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공공비용으로 자녀의 IEE 를 요청하면, 학군은 지체 없이 **다음 중 한가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a)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학군의 자녀 평가가 적절함을 증명하는 심의를 요청하거나, 또는 (b) 심의에서 학부모가 입수한 자녀 평가자료가 학군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군이 입증하지 못하면, 공공비용으로 IEE 를 시행합니다.

2. 학교 학군이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에서 학군의 자녀 평가가 적절하다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경우에도, 학부모는 IEE 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IEE 는 공공비용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3. 자녀의 IEE 를 요청하면, 학군은 학부모에게 학군이 실시한 자녀 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군은 해명을 요구할 수 없고, 자녀에게 공공비용으로 제공하는 IEE 를 지연하거나 학군의 평가를 옹호하기 위해 적법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학군이 실시한 자녀의 평가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 당 1 회에 한하여 공공비용으로 자녀의 IEE 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주도한 평가

공공비용으로 자녀의 IEE 를 받거나 사비로 취득한 자녀 평가결과를 학군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1. 평가 결과가 IEE 에 대한 학군의 기준을 충족하면 학군은 자녀에게 FAPE 제공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서 반드시 그 평가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u>그리고</u>
2. 학부모 또는 학군은 자녀와 관련한 심의에서 그 평가자료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의 심의관의 평가 요청

공정한 심의의 심의관(Impartial Hearing Officer: IHO)이 적법절차 심의의 일환으로 학생의 IEE 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비용은 공공비용으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학군의 기준

IEE 가 공공비용으로 시행되는 경우, 평가 장소 및 시험관의 자격을 포함한 평가 수행 기준은 (기준이 학부모의 IEE 에 대한 권리와 부합하는 한에서는) 학군이 평가를 처음 개시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기준을 제외하고, 학군은 공공비용으로 시행한 IEE 와 관련하여 조건을 부과하거나 시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기밀유지

정의

34 CFR 300.611 항

정보의 비밀성 항목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파기란 정보에서 더 이상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파기 또는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기록이란 34 CFR 파트 99 (1974 년 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20 U.S.C. 1232g 의 시행규정)에서 정의된 "교육기록"에 포함되는 기록 유형을 의미합니다.

참여기관이란 개인신상정보를 수집, 유지 또는 사용하거나 IDEA 파트 B 하에 해당 정보를 획득하는 모든 학군, 기관 또는 협회를 의미합니다.

개인신상 정보

34 CFR 300.32 항; 8 NYCRR 200.5 항(e)

개인신상 정보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a) 학생의 이름, 학부모 이름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

(b) 학생의 주소

(c) 학생의 사회보장번호 또는 학생 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번호 또는

(d) 학생의 신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또는 기타 정보의 목록

학부모 대상 통지문

34 CFR 300.612 항

뉴욕주 교육부와 학군이 개인신상 정보를 보관할 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적절한 통지문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성에 대해 부모에게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1. 뉴욕주의 다양한 인구집단에 맞춰 다양한 언어로 통지문이 발송된다는 설명
2. 개인신상 정보가 보관될 학생에 대한 설명, 수집하려는 정보의 유형, 정보 수집 방법(정보 수집원 포함), 그리고 정보의 활용처에 대한 설명
3. 개인신상정보의 보관, 제3자에 공개, 보존 및 파기 시 참여기관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정책 및 절차의 요약, <u>그리고</u>
4. FERPA 및 34 CFR 파트 99에 수록된 시행규정에 속하는 권리를 비롯하여 개인 신상 정보와 관련하여 학부모 및 학생이 갖는 모든 권리에 대한 설명

본격적인 신원, 소재 파악 또는 평가 활동[또한 "아동 찾기(Child Find)"로도 알려져 있음]에 앞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소재와 신원확인 및 평가 활동에 대해 학부모에게 알리기에 적합한 적절한 발행부수를 보유한 신문이나 기타 매체 또는 양 매체에 통지문을 개재 또는 발표해야 합니다.

열람권

34 CFR 300.613 항; 8 NYCRR 200.2 항(b)(6) 및 200.5 항(d)(6)

참여기관은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학군이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한 학생의 모든 교육기록을 학부모가 열람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참여기관은 지체 없이 IEP 와 관련한 모든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징계와 관련한 분쟁해결 회의 또는 심의 포함)에 앞서 자녀에 관한 교육기록을 열람 및 검토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든 학부모가 요청한 때로부터 45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학부모의 권리는 다음사항을 포함합니다:

1. 기록에 대한 설명 및 해석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청에 대한 참여기관의 답변
2. 학부모가 효과적으로 기록을 열람 및 검토할 수 없고 기록 사본을 받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에 기록 사본을 요청 그리고
3. 학부모를 대변하는 사람/기관이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

참여기관은 후견이나 별거 및 이혼 등에 적용되는 주법에 의거하여 학부모가 권한이 없다는 통고를 받지 않은 한, 학부모가 자녀의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열람 기록

34 CFR 300.614 항

각 참여기관은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수집, 유지 또는 사용된 교육기록을 열람한 관계자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학부모 및 권한이 부여된 참여기관 직원의 열람은 제외), 이러한 기록은 관계자의 이름, 열람한 날짜 및 허가 목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1 명 이상의 학생에 관한 기록

34 CFR 300.615 항

1 명 이상의 학생 정보를 담고 있는 교육기록의 경우, 이들 학생의 부모는 본인의 자녀와 관련이 있거나 특정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만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34 CFR 300.616 항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참여기관은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한 교육기록의 유형 및 위치 목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수수료

34 CFR 300.617 항

수수료가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학부모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한, 각 참여기관은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기록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IDEA 파트 B에 의거하여 참여기관은 정보의 검색 또는 조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의 수정

34 CFR 300.618 항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수집, 보관 또는 사용되는 교육기록에서 자녀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틀리거나 또는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학부모는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참여기관에 정보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학부모의 요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합당한 기간 내에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변경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정보의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반드시 거절 사실과 더불어 **심의 기회**에 기술된 바에 따라 변경 목적에 대한 심의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심의 기회

34 CFR 300.619 항

참여기관은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틀리거나 또는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기록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

34 CFR 300.621 항

교육기록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의는 반드시 FERPA 에 의거한 심의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심의 결과

34 CFR 300.620 항

심의의 결과, 특정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학생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참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정보를 변경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 특정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학생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참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학부모가 자녀의 정보에 대한 의견 또는 참여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한 진술서를 첨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학생의 기록에 첨부된 진술서는 반드시:

1. 참여기관이 기록 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보관하는 한, 학생 기록의 일부로써 참여기관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하고, <u>또한</u>

2. 참여기관이 학생의 기록 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어떤 관계자에게든 공개할 경우 관련 내용을 함께 공해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34 CFR 300.622 항; 8 NYCRR 200.5 항(b)

개인신상정보가 교육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FERPA 에 의거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참여기관의 직원 이외의 관계자에게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전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IDEA 파트 B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기관의 직원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환(transition)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기관의 담당자에게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 또는 뉴욕주 법률하에 성년에 도달한 학생(18 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학생이 학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학군에 속한 사립학교에 재학하거나 진학할 예정이면, 해당 사립학교의 학군과 거주하는 학군간에 학생의 개인신상 정보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호조치

34 CFR 300.623 항

각 참여기관은 개인신상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 단계마다 정보의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 참여기관 마다 개인신상 정보의 비밀 보호를 책임질 담당 직원을 1명씩 두어야 합니다.

개인신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IDEA 파트 B 및 FERPA 에 의거하여 비밀유지와 관련한 뉴욕주의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연수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참여기관은 공식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내부에서 개인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원들의 이름 및 직위를 기록한 최신 목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보의 파기

34 CFR 300.624 항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한 개인신상 정보가 학생의 교육 서비스 제공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학군은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학부모의 요청 시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학년, 출석 기록, 출석한 수업, 이수한 학년 그리고 이수연도와 같은 영구 기록은 무기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

적법절차 심의 이의신청과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의 차이

IDEA 파트 B 는 뉴욕주 이의신청과 적법절차 이의신청 및 심의에 대해 별개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학군, 뉴욕주 교육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파트 B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뉴욕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또는 학군만이 장애학생의 신원확인, 평가 또는 교육 편성, 또는 장애학생에 대한 FAPE 제공의 개시 또는 변경을 위한 제안 또는 거부 등의 관련문제에 대한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주 교육부 직원은 적절한 절차에 따른 기한연장이 없는 한 60 일 내에 뉴욕주 이의신청을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의 심의관은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심리하고(분쟁해결 회의를 통해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심의관이 구체적인 시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한, (이 문서에서 **"분쟁해결 과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결정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취학 연령에 달한 학생의 경우 45 일 내에, 취학 전 학생의 경우 30 일 내에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연장은 학부모 또는 학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루어집니다. 뉴욕주 이의신청 및 적법절차 이의신청, 해결, 그리고 심의 절차는 아래에 더 상세히 기술됩니다.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의 채택

34 CFR 300.151 항; 8 NYCRR 200.5 항(I)

일반

뉴욕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1. 다른 주의 조직 또는 개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비롯한 모든 이의신청 해결 절차
2. 뉴욕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서를 다음 주소로 제출하십시오:
   Statewide Special Education Coordinator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Vocational and Educational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ne Commerce Plaza, Room 1624
Albany, NY 12234

3.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를 학부모 교육 및 정보센터, 보호 및 권리옹호기관,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기타 적절한 단체를 포함한 학부모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절차

해당 서비스의 거부에 대한 구제책

뉴욕주 교육부의 조사 결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뉴욕주 이의신청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교육부는 다음의 사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1. 학생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실패 그리고
2. 향후 모든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최소한의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

34 CFR 300.152 항; 8 NYCRR 200.5 항(I)

시한 설정; 최소한의 절차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뉴욕주 교육부는 60일 내에 관련 내용을 해결할 것을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뉴욕주 교육부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독립적인 현장조사 수행하기 위해
2. 이의신청자(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의 주장과 추가 관련정보를 제출할 기회 부여하기 위해

3. 학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 이의에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 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의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 그리고 (b) 이의를 제기한 부모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여할 것을 합의할 기회
4.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해 검토하고, 학군이나 기타 공공기관이 IDEA 파트 B의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그리고
5. 이의신청서의 주장을 다룬 서면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기 위해. 결정서의 포함 내역: (a) 조사결과 및 결론, 그리고 (b) 뉴욕주 교육부의 최종결정 사유.

시한 연장; 최종 결정; 실행

상기에 기술된 뉴욕주 교육부의 절차는 또한 반드시 다음 내용을 허용 및 포함하여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60일의 기한연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a) 특정 뉴욕주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경우, 또는 (b) 학부모와 학군 또는 기타 관련 공공기관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한 연장을 합의한 경우.
2. 필요한 경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뉴욕주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록해야 합니다: (a) 기술적 지원 활동, (b) 협상 그리고 (c)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시정조치.

뉴욕주 이의신청 및 적법절차 심의

적법절차 이의신청서 제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법절차 심의 대상이 되는 뉴욕주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거나, 다수의 쟁점을 기술하고 있는 이의 신청서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쟁점이 심의 대상이면, 뉴욕주 교육부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 뉴욕주 이의신청 또는 적법절차 심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의신청 부분을 유보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뉴욕주 이의신청상의 모든 쟁점은 위에 기술된 시한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쟁점이 앞서 동일한 관계자 (학부모와 학군)와 관련된 적법절차 심의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면, 심의의 결정은 해당 쟁점에 구속력을 가지므로, 뉴욕주 교육부는 이의신청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학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적법절차 심의 결정을 불이행했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뉴욕주 교육부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34 CFR 300.153 항; 8 NYCRR 200.5 항(I)

조직이나 개인은 위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서명된 뉴욕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이의신청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학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IDEA 파트 B의 요구사항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술
2.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3. 이의신청자의 서명 및 연락처
4. 특정 아동과 관련된 위반을 주장할 경우:
   (a) 해당 아동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b) 해당 아동이 속한 학교의 이름
   (c) 집 없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연락 정보 및 학생이 속한 학교의 이름
   (d) 해당 아동이 갖고 있는 문제의 성격 기술 (해당문제와 관련한 사실 포함)
   (e)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 제기인이 알고 있고 활용 가능한 문제해결 방법

이의 제기인은 **뉴욕주 이의신청 절차의 채택**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의 접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뉴욕주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뉴욕주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학군 또는 아동을 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에게 그 사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 절차

적법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34 CFR 300.507 항; 8 NYCRR 200.5 항(i) 및 200.5 항(j)

일반사항

학부모나 학군은 학생의 신원확인, 평가 또는 교육적 배정, 또는 학생에 대한 FAPE 제공의 시작 또는 변경을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은, 학부모 또는 학군이 적법절차 이의제기의 사유로 의심가는 조치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내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기한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학군이 이의신청서에서 밝힌 쟁점을 해결했다는 잘못된 진술을 했거나 또는
2. 학군이 IDEA 파트 B에 의거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학부모를 위한 정보

학부모가 정보를 요청한 경우 **또는** 학부모나 학군이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학군은 해당 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또는 비용이 적게 드는 모든 법률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

34 CFR 300.508 항; 8 NYCRR 200.5 항(i) 및 (j)

일반사항

심의를 요청하려면, 학부모 또는 학군(또는 학부모나 학군의 변호사)은 상대방에게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나 학군 어느 쪽이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그 사본을 뉴욕주 교육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의 내용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이름
2. 아동의 거주지 주소
3. 아동이 속한 학교 이름
4. 아동이 집 없는 아이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그의 연락 정보 및 학교 이름
5. 제안 또는 거부된 조치와 관련된 해당 아동이 갖고 있는 문제의 성격 기술 (해당문제와 관련한 사실 포함) <u>그리고</u>
6. 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 제기인이 알고 있고 활용 가능한 문제해결 방법

적법절차 이의신청에서 심의 전 필요한 통지

학부모나 학군(또는 학부모나 학군의 변호사)이 아래에 열거된 정보가 담긴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적법절차 심의가 실시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자격

적법절차 이의신청이 진행되려면, 충분한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은, 그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상대(학부모 또는 학군)가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의관과 상대방에게 적법절차 이의신청이 상기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정한 심의관(Impartial Hearing OfficerL IHO)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로부터 적법절차 이의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통보를 받을 경우, 그로부터 5 일 내에 적법절차 이의신청의 상기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학부모와 학군에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변경

학부모 또는 학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아래에 기술된 분쟁해결 회의를 통하여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해결할 기회를 가질 때, <u>또는</u>
2. 늦어도 적법절차 심의가 시작되기 5일 전에, 심의관이 변경을 허가한 때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변경하는 경우, 분쟁해결 회의를 위한 시한(이의제기일로부터 15 일 이내) 및 결정 기간(이의제기를 한 날로 부터 30 일 이내)은 변경된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 관련 지역교육기관(Local Educational Agency: LEA) 및 학군의 답변

학군이 **사전 통지문**에 기술된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의 주된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문을 보내지 않은 경우, 학군은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10 일 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답변서를 학부모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1. 학군이 적법절차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조치를 제안 또는 거절하는 이유 설명

2. 자녀의 CSE 또는 CPSE가 고려하는 다른 선택 방안 및 그러한 선택 방안을 거부하는 이유 설명
3. 학군이 조치의 제안 또는 거절의 논거로 이용한 각각의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에 대한 설명 **그리고**
4. 학군이 제안 또는 거절조치를 취하는 기타 사유 설명.

학군이 위 항목 1-4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학부모의 적법절차 이의신청의 부적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상기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LEA 또는 학군의 답변** 하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절차 이의를 제기 받은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내에 이의신청서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답변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견본 양식

34 CFR 300.509 항

뉴욕주 교육부는 학부모의 뉴욕주 이의신청 및 적법절차 이의신청서 제출을 돕기 위한 견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욕주 교육부나 학군은 학부모에게 이 견본 양식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는 적법절차 이의신청 또는 뉴욕주 이의신청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한 뉴욕주 견본 양식이나 기타 적절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견본 양식은 http://www.vesid.nysed.gov/specialed/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 사본은 학군이 제공하거나 518-473-2878 번으로 뉴욕주 교육부, 장애인대상 직업 및 교육 담당실(VESID), 특수교육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재

34 CFR 300.506 항; 8 NYCRR 200.5 항(h)

일반

적법절차 이의신청서 제출에 앞서 발생한 문제를 비롯하여 IDEA 파트 B 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군은 학부모와 학군이 중재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서 제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법절차 심의를 요청하기 위한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IDEA 파트 B 에 속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절차는 반드시 중재과정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1. 학부모는 물론 학군 측에서도 자발적이어야 함
2.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 권리를 부정 또는 지체시키거나, 또는 IDEA 파트 B에 따른 학부모의 다른 모든 권리를 부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않됨 <u>그리고</u>
3. 중재과정은 효과적인 중재기법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공정한 중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함

학군은 중재과정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부모와 학교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공평한 제삼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지역분쟁해결센터(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CDRC)와 계약을 체결한 제삼자 <u>그리고</u>
2. 학부모에게 중재과정의 이점을 설명하고 사용을 권고하는 제삼자.

뉴욕주는 지역분쟁해결센터(CDRC)에서 교육을 받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법규를 알고 있는 자격을 갖춘 중재자를 활용합니다. 중재자는 지역분쟁해결센터(CDRC)가 무작위, 윤번제 또는 기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중재 협의

중재는 학군을 통하여 지역분쟁해결센터(CDRC)와 협의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회의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비용을 책임집니다.

조정 과정의 각 회의는 적절한 시간에 따라 학부모 및 학군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중재 합의

학부모와 학군이 중재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합의서에 해결안을 명시하고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논의는 비밀로 유지하며 이후 어떠한 적법절차 심의 또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합의서에 명시한다. <u>그리고</u>
2. 학부모와 학군의 법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인 학군 대표가 서명한다.

서명한 중재 합의서는 관할권이 있는 모든 주 법정(주 법하에 유사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법정) 또는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강제력을 갖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논의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장래 어떠한 적법절차 심의 또는 연방법원이나 IDEA 파트 B에 따른 지원을 받는 주의 주법원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재자의 공정성

중재자는:

1. 뉴욕주 교육기관(State Educational Agency: SEA) 또는 학생의 교육이나 보육에 관여하는 학교의 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u>그리고</u>
2. 반드시 중재자의 객관성과 상충하는 개인 또는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 밖에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중재자로 정부기관이나 학군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군이나 정부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 및 심의 계류 중 아동의 배정 (미결)

34 CFR 300.518 항; 8 NYCRR 200.5 항(m)

아래에 **장애학생의 징계절차**에 기술된 내용을 제외하고, 분쟁해결 과정 기간 및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 또는 법정 소송절차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적법절차 이의신청이 상대방에게 송부되면, 학부모와 학부모의 학군 또는 학부모와 뉴욕주 심사관(State Review Officer: SRO)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학생은 현재 배정학급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적법절차 처리가 최초 평가를 위한 동의와 관련된 경우, 절차가 계류 중일 동안 학생은 평가를 받지 않게 됩니다.

분쟁의 내용이 공립학교의 최초 입학전형과 관련된 경우, 학생은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학부모의 동의 하에 정규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이 특수교육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학부모와 학군의 동의가 있을 시, 해당 아동은 심의 또는 항소 중에 특수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IDEA 파트 C[조기 중재 서비스 (Early Intervention Services)]에서 IDEA 파트 B[취학 전 특수교육 서비스(Preschool Special Education Services)]로 진학할 예정이며 3 세가 되어 더 이상 파트 C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아닌 아동에 대해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아동의 최초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적법절차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학군은 아동이 받아온 파트 C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동이 IDEA 파트 B 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이며 최초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가 동의하면,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군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학부모와 학군 모두 동의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분쟁해결 과정

34 CFR 300.510 항; 8 NYCRR 200.5 항(j)

분쟁해결 회의

적법절차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내 그리고 적법절차 심의 시작 전, 학군은 학부모가 제기한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있는 관계자나 CSE 또는 CPSE 의 담당자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는:

1. 학군을 대신하여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학군의 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2.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한, 학군의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군은 CSE 또는 CPSE 관계자의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학부모가 적법절차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표명함으로써, 학군이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쟁해결 회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학부모와 학군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또는**
2. 학부모와 학군이 **중재**에 기술된 바와 같이 중재과정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분쟁해결 기간

학군이 적법절차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내에 (분쟁해결 과정 기간 중에) 학부모가 만족할 만한 해결을 제시하지 않으면, 적법절차 심의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의 발표를 위한 취학 연령 아동 대상 45 일의 시한 및 취학 전 아동의 경우 30 일의 시한은, 아래에 설명되듯이 30 일이라는 분쟁해결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30 일의 분쟁해결 기간이 만료하는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학부모와 학군 모두 분쟁해결 과정을 포기하거나 중재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분쟁해결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분쟁해결 과정 및 적법절차 심의의 시한이 연기 됩니다.** 학부모가 분쟁해결 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학부모의 공정한 심의는 IHO에 의하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학군은 학부모의 분쟁해결 회의 참석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군이 합당한 노력을 다하고 그러한 노력을 증거서류로 증명했으나 학부모의 분쟁해결 회의 참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30 일이라는 분쟁해결 기간이 종료될 때 학군은 IHO 에 학부모의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력의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학군의 노력을 기록으로 담고 있어야 합니다:**

1. 전화 통화 또는 통화 시도 및 통화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2. 학부모에게 발송된 통신문 및 수령한 모든 답신, 그리고
3. 학부모의 가정 또는 직장 방문 및 방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학군이 학부모의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에 분쟁해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또는** 분쟁해결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심의관에게 취학연령에 도달한 자녀의 경우 45 일의 적법절차 심의 시한(또는 취학 전 학생의 경우 30 일의 적법절차 심의 시한)이 개시된다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 일의 분쟁해결 기간의 조정

학부모와 학군이 분쟁해결 회의의 포기를 서면 합의하면, 적법절차 심의를 위한 취학연령에 도달한 학생의 45 일 시한 (취학 전 학생 30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중재 또는 분쟁해결 회의 시작 후 30 일의 결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학부모와 학군이 어떠한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서면으로 합의하면, 취학연령에 도달한 학생의 경우 45 일 또는 취학 전 학생의 경우 30 일의 적법절차 심의시한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학군이 30 일의 결정 기간 종료 시에 중재 과정을 이용하기로 합의하면, 양자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나 학군 중에 어느 쪽이든 중재 과정을 철회하면, 적법절차 심의를 위한 45 일 또는 30 일 시한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서면 합의

분쟁해결 회의에서 분쟁 해결이 타결되면, 학부모와 학군은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학부모 및 학군의 법적인 의무 이행 권한을 갖인 학군 대표가 서명함 그리고
2. 관할권이 있는 모든 뉴욕주 법원(유사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뉴욕주 법원) 또는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강제력이 있는 합의서 작성.

합의 재심 기간

학부모와 학군이 분쟁해결 회의의 결과로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어느 당사자든 학부모와 학군 모두 합의서에 서명한 때로부터 3 일(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업무가 진행되는 날) 내에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

34 CFR 300.511 항; 8 NYCRR 200.1 항(x), 200.5 항(i) 및 (j)

일반

적법절차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학부모나 분쟁에 관련된 학군은 **적법절차 이의신청** 및 **분쟁해결 과정**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의 기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군은 공정한 심의관을 교대 목록에서 선임합니다. 공정한 심의관은 공정한 심의를 소집합니다.

공정한 심의관(IHO)

공정한 심의관(IHO)의 최소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욕주 교육기관(SEA) 또는 학생의 교육이나 보육에 관여하는 학교의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심의관으로 해당 기관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심의에서 심의관의 객관성과 상충하는 사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3. 식견이 높고 IDEA 규정, IDEA와 관련한 연방 및 뉴욕주 법규, 그리고 연방 및 주 법원의 IDEA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이해해야 합니다. <u>그리고</u>
4. 심의를 지휘하고 적절한 표준 법률 관행에 부합되게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각 학군은 IHO 의 역할을 수행할 사람의 목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심의의 내용

적법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절차 이의신청 통지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을 적법절차 심의에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의 요청 시한

학부모 또는 학군은 이의가 제기된 쟁점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2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한의 예외

상기 시한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부모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학군이 학부모가 이의신청에서 제기한 문제 또는 쟁점을 해결했다고 그릇된 진술을 했거나, 또는
2. 학군이 IDEA 파트 B 에 의거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심의권

34 CFR 300.512 항; 8 NYCRR 200.5 항(j)

일반

적법절차 심의(징계 절차와 관련한 심의 포함) 또는 항소 당사자는 누구나 **결정에 대한 항소; 공정한 재심**에 기술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변호인 및/또는 장애학생의 문제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과 동행 및 자문을 받을 권리
2. 증거 제시, 증언, 반대신문 및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심의 최소 5일(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업무가 진행되는 날) 전에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의에서 채택하지 않도록 할 권리
4. 학부모가 원하면 심의의 서면 또는 전자 녹취록을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5. 학부모가 원하면 심의의 서면 또는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결정의 녹취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의 추가 공개

적법절차 심의로부터 최소 5일(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업무가 진행되는 날) 전에, 학부모와 학군은 당일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와 더불어 심의에서 사용할 예정인 평가에 근거한 권고사항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IHO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심의에서 관련 평가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1. 자녀를 출석시킬 권리
2. 심의를 일반에 공개할 권리
3. 비용 부담 없이 심의 기록,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학부모에게 제공된 결정을 받아볼 권리 **그리고**
4. 필요 시, 비용부담 없이 수화 통역 또는 학부모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심의 결정

34 CFR 300.513 항; 8 NYCRR 200.5 항(j)

심의관의 결정

학생이 FAPE를 받았느냐의 여부에 관한 IHO의 결정은 반드시 실제 근거에 입각해야 합니다.

절차상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IHO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학생이 FAPE를 받지 않았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FAPE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2. 학생에 대한 FAPE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상당히 침해한 경우 또는
3.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원인이 된 경우

해석 조항

위에 기술된 어떤 규정도 IHO 가 학군에 연방법규 (34 CFR 300.500- 300.536 항)의 IDEA 파트 B 에 따른 절차적 보호 항목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떤 규정도 학부모가 적법절차 심의 결정에 대하여 SRO(**항소 – 최종적 결정** 참조)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서 제출, 적법절차 이의신청, 견본 양식, 분쟁해결 과정,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 심의권, 그리고 심의 결정** (34 CFR 300.507 - 300.513 항).

별도의 적법절차 심의 요청

어떤 연방법규 IDEA 파트 B하의 절차적 보호(34 CFR 300.500 - 300.536항) 규정도 학부모가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과 다른 문제로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자문단 및 일반 대중에 조사결과 및 결정내용 제공

SEA 또는 학군(학부모의 심의에 책임이 있는 쪽)은 적법절차 심의나 뉴욕주 교육부에 항소 시 모든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한 후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주 교육부는 조사결과 및 결정내용을 교육부장의 특수교육 자문단에게 제출하고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입니다.

항소

최종 결정; 항소; 공정한 재심

34 CFR 300.514 항; 8NYCRR 200.5(k)항 및 파트 279

심의의 최종 결정

적법절차 심의(징계 절차와 관련한 심의 포함)에서 내려진 결정은 심의의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중에 한쪽이 그러한 결정에 대해 뉴욕주 교육부의 뉴욕주 심사국 (Office of State Review: OSR) SRO 에 항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입니다.

결정에 대한 항소; 공정한 재심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중에 한쪽이 심의 조사결과와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SRO 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NYCRR 파트 279 에 의거하여 SRO 에 항소 개시와 항소 제기에 관한 규정과 시한은 다음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sro.nysed.gov/appeals.htm. IHO 의 결정에 대하여 SRO 에 항소하려면, IHO 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5 일 내에 항소를 개시해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SRO는 항소 제기된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에 대해 공정한 재심을 수행해야 합니다. 재심을 수행하는 심사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심의 기록을 조사합니다.
2. 심의 절차가 적법절차의 요건에 부합하였는지 확인합니다.
3. 필요 시 추가 증거를 조사합니다. 추가 증거를 얻기 위한 심의가 개최될 경우, 상기의 **심의권**에 기술된 관련 내용이 적용됩니다.

4. SRO의 재량으로 양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반론 기회를 부여합니다.
5. 재심이 완료될 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6.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학부모와 학군에게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와 결정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사본을 배포합니다.

자문단 및 일반 대중에 조사결과 및 결정내용 제공

OSR은 모든 개인신상정보를 삭제한 후 반드시:

1. 조사결과 및 항소 결정내용을 뉴욕주 특수교육 자문단 (교육부장의 특수교육 자문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심의 최종적 결정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SRO의 결정은 학부모 또는 학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결정입니다.

심의 및 재심의 시한 및 편의

34 CFR 300.515 항; 8 NYCRR 200.5 항(j) 및 200.16 항(h)

학군은 30 일의 분쟁해결 회의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취학연령에 도달한 학생의 경우 최소 45 일, 취학 전 학생의 경우 최소 30 일 전에, **또는 30 일의 분쟁해결 기간의 조정**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조정된 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취학연령에 도달한 학생의 경우 최소 45 일, 취학 전 학생의 경우 최소 30 일 전에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심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그리고
2. 결정 사본을 학부모와 학군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SRO는 재심 요청을 수령일로부터 최소 30 일 전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1. 재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그리고
2. 결정 사본을 학부모와 학군에 우편으로 송부한다.

IHO 또는 SRO 는 학부모나 학군이 구체적인 시한 연장을 요청할 시 상기에 기술된 기간(취학연령에 도달한 학생의 경우 45 일, 취학 전 학생의 경우 30 일 심의 결정 시한 및 30 일 SRO 결정 시한)을 초과하여 시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말로 주장을 펼치는 모든 심의와 재심은 반드시 학부모 및 자녀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소송 제기 기간을 포함한 민사소송

34 CFR 300.516 항; 8 NYCRR 200.5 항(k)

일반

뉴욕주 심사의 조사결과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는 적법절차 심의(징계 절차와 관련한 심의 포함)의 대상이 된 사안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은 분쟁에서의 금액과 상관없이 관할권이 있는 뉴욕주 법원 (유사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 주 법원) 또는 미국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는 SRO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추가 절차

모든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1. 행정절차의 기록을 전달 받습니다.

2. 학부모나 학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증거를 심리합니다. 그리고
3. 증거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제를 승인합니다.

지방법원의 관할

미국의 지방법원은 분쟁 금액과 상관없이 IDEA 파트 B 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석 규정

IDEA 파트 B에는 미국헌법(U.S. Constitution),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1973년 장애인재활법 제V편(Title V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섹션 504) 또는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법률 하에서 이용 가능한 권리, 절차 및 구제책을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IDEA 파트 B에 의거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를 얻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 상기 법 하에서 소송 제기 전, 당사자는 IDEA 파트 B에 따른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절차와 동일하게 상기에 기술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모두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는 IDEA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과 중복되는 다른 법률하의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하의 구제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DEA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즉, 적법절차 이의신청, 분쟁해결 회의 및 공정한 적법절차 심의 절차)를 먼저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

34 CFR 300.517 항

일반

IDEA 파트 B 하에 제기된 모든 소송이나 절차에서 학부모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학부모의 비용 지출 분 중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IDEA 파트 B하에 제기된 모든 소송이나 절차에서 학부모의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 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승소한 학군이나 뉴욕주 교육부의 비용의 일부로 학부모의 변호사가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a) 법원이 판단하기에 불성실, 불합리 또는 근거가 없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b) 소송이 불성실, 불합리 또는 근거 없음이 분명해진 이후에도 소송을 계속한 경우.
또는

IDEA 파트 B 하에 제기된 모든 소송이나 절차에서, 학부모의 적법절차 심의 또는 이후 법정소송 제기가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기된 경우 (예: 괴롭힘, 불필요한 지연 또는 불필요한 소송비용 증가), 법원은 승소한 SEA 또는 학군에게 발생한 비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학부모의 변호사가 지불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급

법원은 다음과 같이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1. 비용은 소송 또는 심의가 시작된 지역사회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질에 대하여 일반화된 요율에 근거해야 합니다. 비용 지급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너스나 승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IDEA 파트 B에 따른 모든 소송이나 절차에서 학부모에게 서면 화해가 제의된 후에 이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a. 화해 제의가 연방민사소송규정의 규정 68(Rule 68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규정된 기한 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적법절차 심의 또는 뉴욕주 재심의 경우, 절차가 시작되는 때로부터 최소 10 일 경과 후 이루어진 경우

   b. 화해 제의가 10 일 내에 수용되지 않은 경우 <u>그리고</u>

   c. 학부모가 최종적으로 획득한 구제가 화해 제의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법원이나 행정 심의관이 판정한 경우.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승소하고 거절한 조정안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학부모에게 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상의 절차나 법정 소송에 따른 결과로 소집된 CSE 또는 CPSE 회의가 아닌 경우 관련 회의 참여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재**에 기술된 중재에 대해서는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쟁해결 회의 부분에 기술된 의미로의 분쟁해결 회의는 행정 심의 또는 법정 소송의 결과로 소집된 회의로 보지 않으며, 또한 본 변호사 비용 규정 조항의 목적에 따른 행정 심의 또는 법정 소송으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는 IDEA 파트 B에 따라 인정된 변호사 비용을 적절히 삭감합니다:

1. 학부모나 학부모의 변호사가 소송 또는 소송 중 부당하게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킨 경우

2. 지역사회에서 비슷한 기술, 평판 및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유사한 서비스 비용에 비해 지급될 시간당 비용이 비합리적으로 초과된 경우

3. 소송 또는 소송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투입된 시간과 제공된 법률 서비스가 과도한 경우 또는
4. 학부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기술된 바에 따라 학군에 발송하는 적법절차 요청 통지문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뉴욕주 또는 학군이 소송이나 절차의 최종적인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IDEA 파트 B의 절차적 보호에 의거하여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법원은 비용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장애학생의 징계절차

교직원의 권한

34 CFR 300.530 항; 8 NYCRR 201.2 - 201.7 항

사례별 판단

교직원은 다음과 같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따르는 데 있어 학교의 학생품행 규정을 위반한 장애학생에게 배정의 변경이 적절한 결정이었는 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각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장애 학생의 징계는 교육법(Education Law)의 3214 항 및 교육부장 규정의 파트 201(Part 201 of the Regulations of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품행에 관한 학칙 위반을 이유로 학생을 정학 또는 이동조치 할 권한이 있는 반면, 학부모 및 자녀는 해당 과정 전반에 걸쳐 특정한 권리를 갖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

1. 가능하면 즉시 전화로 통보를 받고, 5 일 또는 그 미만의 수업 일에 해당하는 정학 처분 예정에 대해 24 시간 내에 통지를 받을 권리. 통지문은 사건, 제안된 정학 내용 및 학생의 권리에 대해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장과의 비공식 협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자녀의 등교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정학 전에 개최됩니다 (위험한 경우, 비공식 협의는 자녀가 정학 처분을 받은 후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

2. 정학이 연속 5 일(수업일 기준)이상일 경우, 학부모가 교육장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통지받을 권리. 통지문은 자녀의 상담, 질문 및 증인 출석 권리에 대해 기술합니다.
3. 학생이 의무교육 대상 연령일 경우, 학생의 정학 또는 이동조치 시 첫 10 일 동안 비장애 학생과 동일하게 대체수업을 받을 권리.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동일하게, 교직원은 연속 **10일(수업일 기준)**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학생품행 학칙을 위반한 장애학생을 현 배정 학급에서 적절한 임시 대안교육 환경(Interim Alternative Educational Setting: IAES)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아동의 CSE 또는 CPSE, 다른 환경 또는 정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은 별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동일 학년에서 추가적으로 연속 **10일(수업일 기준)** 이하의 이동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이동조치의 사유로 학급 배정이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의는 아래 **징계상 이동조치로 인한 배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장애학생이 동일 학년에서 **총 10 일(수업일 기준)** 동안 현재 배정으로부터 이동조치를 받으면, 학군은 동 학년의 모든 이동조치 기간 동안 아래 **서비스**에 기술된 바에 의거하여 필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권한

학생품행 규정 위반 행위가 장애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아래 **발현 판단** 참조) 징계상 배정 변경이 연속 **10 일(수업일 기준)**을 넘길 경우, 교직원은 비장애학생에게 적용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 및 기간 동안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가 아래 **서비스**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공해야 하는 학생 대상 서비스는 예외입니다. 학생의 CSE 또는 CPSE 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임시 대안교육 환경(IAES)을 판단합니다.

서비스

현재의 배정에서 이동조치를 받은 장애학생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는 임시 대안교육 환경(IAES)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학군이 비슷한 이동조치 처분을 받은 비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의 현재 배정으로부터 이동조치 처분을 받은 장애학생에게도 동일 학년에서 **10 일(수업일 기준) 또는 그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한 학년에서 10 일 미만의 정학 처분을 받은 장애학생이 의무교육 연령일 경우, 학군은 반드시 대체수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이 의무교육 연령에 속하지 않는 경우 대체수업이 비장애 학생에게 제공될 경우 해당 반드시 장애 학생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 학년에서 정학기간의 첫 10 일 동안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서비스 요구는 비장애 학생의 경우와 같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최소 하루 1 시간, 그리고 중등학생의 경우 하루 2 시간 대체수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의무교육 연령에 속하지 않는 장애학생이 정학을 받으면, 학군은 비장애 학생에게 대체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학생에게 대체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생의 현재 배정으로부터 **10일(수업일 기준) 이상** 이동조치 처분을 받은 장애학생은:

1. 비록 환경이 달라도 일반교육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장애학생의 개별교육계획(IEP)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2. 적합한 경우 기능적 행동 진단(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그리고 행동 위반을 다루도록 기획된 행동 중재 서비스 및 조정(behavioral intervention services and modifications)을 받음으로써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학생이 동일 학년에서 **10 일(수업일 기준)** 동안 본인의 현재 배정으로부터 이동조치를 받은 후, **만약** 현재의 이동조치가 연속 **10 일(수업일 기준)** 또는 그 미만이고, 이동조치가 배정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 (정의는 아래 참조), 교직원은 해당 학생의

교사 가운데 최소 1명과 협의를 통해 환경은 다르지만 일반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시켜 개별교육계획(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지 판단합니다.

이동조치로 배정을 변경하는 경우(정의는 아래 참조), 해당 학생의 CSE 또는 CPSE는 다른 환경이기는 하지만 일반교육 과정에 계속 참여시켜 개별교육계획(IEP)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발현 판단

학생품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배정 변경이 결정하는 날로부터 **10 일(수업일 기준)** 내에 [연속 **10 일(수업일 기준)** 또는 그 미만 동안의 이동조치를 취하지만 배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학군, 부모 및 CSE 또는 CPSE의 관계자(부모 및 학군에 의해 결정됨)는 학생의 개별교육계획(IEP), 교사의 모든 관찰내역 및 부모가 제공한 관련정보를 비롯하여 학생 파일에서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판단해야 합니다:

1. 문제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로 야기되거나 장애와 직접적이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가?
   <u>또는</u>
2. 문제의 행동이 학군의 개별교육계획(IEP)의 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인가?

학군, 부모 및 아동의 CSE 또는 CPSE의 관계자가 상기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문제의 행동은 아동의 장애의 발현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학군, 부모 및 아동의 CSE 또는 CPSE의 관계자가 문제의 행동이 학군의 개별교육계획(IEP) 불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군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인지에 대한 판단

학군, 부모 및 CSE 또는 CPSE 의 관계자가 학생의 행동이 장애에 따른 것라고 판단하면, CSE 또는 CPSE 는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학군이 배정 변경의 원인이 된 행동을 보이기 전에 기능적 행동 진단을 수행하지 않았으면 기능적 행동 진단을 시행하고, 행동중재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는
2. 행동중재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면,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 **특수한 상황**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와 학군이 행동중재 계획 수정의 일환인 배정의 변경에 합의하지 않는 한, 학군은 해당 학생이 옮겨오기 이전의 배정 상태로 학생을 복귀시켜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

위반 행동이 장애로 인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학생이 다음과 같으면, 교직원은 학생을 최대 45 일(수업일 기준) 동안 임시대안교육환경(학생의 CSE 또는 CPSE 가 판단함)으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1. 학교에 무기(정의는 아래 참조)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무기를 소지하거나 교내 또는 뉴욕주 교육부 또는 학군 관할하의 학교 행사에 무기를 소지한 경우
2. 수업 중, 교내 또는 뉴욕주 교육부 또는 학군 관할하의 학교 행사에 고의로 불법 약품(정의는 아래 참조)을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또는 규제 물질(정의는 아래 참조)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한 경우 또는
3. 수업 중, 교내 또는 뉴욕주 교육부 또는 학군 관할하의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중상(정의는 아래 참조)을 입힌 경우

정의

규제 물질이란 규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21 U.S.C. 812(c)) 202(c)항의 별첨 I, II, III, IV 또는 V에 명시된 약품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합니다.

불법 약품이란 규제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소지한 보건관리 전문가의 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소지 또는 사용되거나 또는 동 법률하의 다른 권한 및 연방법률의 기타 규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되는 규제 물질은 제외됩니다.

중상이란 미연방 법전(United States Code) 제18편 1365항 (h)의 제(3)항에 제시된 중상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기란 미연방 법전 제18편 930항 (g)의 제(2)항에 제시된 "위험한 무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통지

학군이 학생품행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이동조치로써 배정 변경을 결정하는 날, 학군은 학부모에게 해당 결정을 통지하고 절차적 보호 통지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징계상 이동조치로 인한 배정 변경

34 CFR 300.536 항; 8 NYCRR 201.2 항

다음과 같은 경우, 이동조치로써 학생의 현재 **배정이 변경**이 됩니다:

1. 이동조치가 연속 10 일(수업일 기준)을 넘을 경우 **또는**
2. 학생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일한 형태로 여러 차례 이동조치를 당했을 경우:
   a. 일련의 이동조치 일수가 한 학년에서 총 10 수업일에 달한 경우
   b. 학생의 행동이 일련의 이동조치 처분을 받은 이전 사건에서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 <u>그리고</u>
   c. 각 이동조치의 기간, 총 시간, 재발하기 까지 걸린 시간 등의 기타요인.

이동조치의 유형에 따라 배정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학군이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적법절차 및 사법 절차를 통해 재심을 하게 됩니다.

배경에 대한 판단

34 CFR 300.531 항; 8 NYCRR 201.10 항

CSE 또는 CPSE 는 **배정을 변경**하는 이동조치 및 상기의 **추가 권한** 및 **특수한 상황** 하의 이동조치에 대해 IAES 를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

34 CFR 300.532 항; 8 NYCRR 201.11 항

일반

장애학생의 부모가 다음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상기 참조) 적법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징계 규정하에서 이루어진 배정과 관련한 모든 결정 **또는**
2. 상기에 기술된 발현 판단

학군이 학생의 현재 배정을 유지할 시 해당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 적법절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상기 참조) 적법절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관의 권한

공정한 심의관(IHO)에 기술된 요건을 충족하는 심의관이 적법절차 심의를 지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1. 학생의 배정 변경이 **교직원의 권한**에 기술된 요건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행동이 장애의 발현이라고 IHO가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이전 배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권한 **또는**
2. IHO가 학생의 현재 배정을 유지할 시 해당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 최대 45 수업일 까지 적절한 IAES로 배정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학군이 판단하기에 학생을 원래의 배정으로 복학시킬 경우 해당 학생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본 심의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군이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의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나 **적법절차 이의신청 절차, 적법절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그리고 **결정에 대한 항소; 공정한 재심**에 기술된 요건을 충족하는 심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1. 학군은 심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0 일(수업일 기준)** 내에 열려야 하고 심의 개최일로부터 **10** 일(수업일 기준) 내에 결정을 내려야하는 긴급 적법절차 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부모와 학군이 회의 철회를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거나 중재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적법절차 이의신청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7 일** 내에 분쟁해결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이의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다른 적법절차 심의 결정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긴급 적법절차 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기 **항소**를 참조하십시오).

항소 중의 배정

34 CFR 300.533 항; 8 NYCRR 201.10 항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부모나 학군이 징계 문제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의 신청을 제기했을 때, 해당 학생은 (부모와 뉴욕주 교육부 또는 학군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HO 의 결정이 내려질 동안 또는 **교직원의 권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동조치 기간의 만료시점까지, 어느 것이든 먼저 일어나는 시점까지임시 대안교육 환경(IAES)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재까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보호

34 CFR 300.534 항; 8 NYCRR 201.5 항

일반

현재까지 학생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품행규정을 위반했으나 학군이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행동이 일어나기 전 아동이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아래에서 판정된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은 통지문에 기술된 보호조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문제에 대한 인식 기반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된 행동이 발생하기 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학군은 아동이 장애학생인 지의 여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 학생의 부모가 해당 교육기관의 감독관이나 행정요원 또는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우려를 서면으로 표명한 경우
2. 부모가 IDEA 파트 B하의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적격성 관련 평가를 요청한 경우, <u>또는</u>

3. 교사나 기타 학군 직원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에 대해 학군의 특수교육 디렉터 또는 학군의 기타 감독직원에게 직접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한 경우.

예외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군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 학부모가 학생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또는
2. 학생이 평가를 받았으나 IDEA 파트 B하의 장애학생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인식 기반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조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 상기의 **징계 문제에 대한 인식 기반 및 예외사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학군이 해당 학생의 장애학생 여부를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학생은 유사한 행위 시 비장애 학생이 받게 되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기간동안 학생에 대한 평가가 요청되면, 평가는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은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적 배정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이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정학이나 제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결과와 부모가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학생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학군은 아래에 기술된 징계 요건을 포함하여 IDEA 파트 B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 집행 및 사법 기관으로의 위탁 및 조치

34 CFR 300.535 항

IDEA 파트 B 는:

1. 기관에서 장애학생의 범죄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금하지 않습니다. 또는

2. 뉴욕주 치안 및 사법당국이 장애학생의 범죄에 대해 연방 및 뉴욕주 법률 적용 시 당국의 의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하지 않습니다.

기록 전달

장애학생의 범죄를 보고할 경우, 학군은:

1. 범죄 보고 관계당국이 참작하도록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 FERPA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해당 학생의 특수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및 개인 복지혜택/보험의 이용

공공보험이 적용되는 장애학생

34 CFR 300.154(d)항; 8 NYCRR 200.5 항(b)(1)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학군은 학생이 참여하는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DEA 파트 B 가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FAPE 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

1. 학군은:
   - 자녀가 FAPE 를 받기위해 학부모에게 공공 혜택에 서명 또는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청구 시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금액 또는 공동부담금의 지불과 같은 일시불 경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군은 학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사용될 경우,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 하에서 학생이 받는 혜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생 동안의 가용 보상 범위 또는 기타 보장 혜택을 감소시키게 되는 경우
     - 공공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에서 비용을 보상해줄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정에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학교에 출석하여야 하는 시간에 학교 밖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
     - 보험료 인상 또는 혜택이나 보험이 중지되는 경우, 또는
     - 총 의료비를 근거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면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2. 학군은 반드시:

- **학부모의 동의 – 정의**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학부모가 공공 혜택나 보험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다고 해서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학군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영 보험이 적용되는 장애학생

34 CFR 300.154(e)항; 8 NYCRR 200.5 항(b)(1)

자녀에게 FAPE 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학군은 학부모가 **학부모의 동의 – 정의**에 따라 동의하는 경우에만 학부모의 민영보험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민영보험 혜택의 이용을 제안할 때마다, 학군은 반드시:

-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 학부모 민영보험 혜택의 이용을 거부했다고 해서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학군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부모의 혜택이나 보험금으로 지불했어야 할 비용(예를 들어, 공제금액 또는 공동부담금)을 학군이 대신 지불하기 위해 IDEA 파트 B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로 공공비용으로 사립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요건

일반사항

34 CFR 300.148 항

학군이 자녀에게 FAPE 을 제공했음에도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나 민간시설에 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IDEA 파트 B 는 학군이 사립학교나 민간시설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교육비용(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포함)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속해있는 학군은 반드시 파트 B 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인구에 34 CFR 300.131 - 300.144 항에 따라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 학생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립학교 입학에 대한 환급

자녀가 이전에 한 학군에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았으나 학부모가 해당 학군의 동의나 추천을 받지 않고 자녀를 사립 유아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할 때, 등록 전 해당 기관이 자녀에게 시의 적절하게 FAPE 를 제공하지 못하여 사립시설 입학이 적절하다고 법원이나 IHO 가 판단하면 법원이나 심의관은 해당 기관에 등록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IHO 또는 법원은 뉴욕주 교육부 및 학군이 제공하는 교육에 적용되는 뉴욕주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학부모의 입학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에 대한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기 단락에 기술된 환급이 삭감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1. (a) 자녀를 공립학교로부터 자퇴하기 전에 학부모가 가장 최근에 참석한 CSE 또는 CPSE 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한 진술서 및 공공비용으로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의사 등을 비롯하여 학군이 자녀에게 FAPE 제공을 위해 제안한 배정을 거부한 사실을 CSE 또는 CPSE 에 알리지 않은 경우, 또는 (b) 공립학교로부터 자녀의 자퇴에 앞서 적어도 주중 10 일(국경일이 주중인 날 포함)전에 학군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자녀의 공립학교 자퇴에 앞서, 학군이 자녀를 평가하려는 의사(적절하고 합당한 평가 목적을 기술한 진술서 포함)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학부모가 거부한 경우 또는

3. 법원의 조사 결과 학부모의 행동이 불합리한 경우

그러나 환급 비용은: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 또는 거부되지 않습니다: (a) 학교가 통지하지 못하게 했거나, (b) 학부모가 상기에 기술된 통지 의무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c) 상기 요구를 준수하는데 학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리고**
2. 법원 또는 IHO 의 재량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삭감 또는 거부되지 않습니다: (a) 학부모가 글자를 모르거나 영어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또는 (b) 상기 요구를 준수하는데 학생에게 심각한 정서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료원

USDOE - IDEA 사이트 - (연방규정집 파트 300 포함) http://idea.ed.gov/

뉴욕주 교육부 - http://www.nysed.gov/home.html

장애인 직업 및 교육 서비스 담당실 (Offic of Vocational and Educational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VESID) – 특수교육 -
http://www.vesid.nysed.gov/specialed/

교육장 규정(Regulations of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파트 200 및 201 -
http://www.vesid.nysed.gov/specialed/publications/lawsandregs/coverpage.htm

VESID 의 최신 내용 - http://www.vesid.nysed.gov/specialed/timely.htm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지역 담당실 –
일반 정보 - http://www.vesid.nysed.gov/specialed/quality/home.html
담당실 위치 - http://www.vesid.nysed.gov/specialed/quality/qaoffices.htm
(다음 페이지에 계속)

VESID – 특수교육 수준 관리 지역 담당실:

중앙 부서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뉴욕주 청사 건물
333 East Washington Street, Suite 527
Syracuse, NY 13202
(315) 428-3287
(315) 428-3286 (팩스)

동부

올버니 지소 (원 커머스 플라자)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Room 1619 One Commerce Plaza
Albany, NY 12234
(518) 486-6366
(518) 486-7693 (팩스)

말론 지소 (VR 지역 사무소)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209 West Main Street, Suite 3
Malone, NY 12953-9501
(518) 483-3530
(518) 483-3552 (팩스)

허드슨 밸리

올버니 지소 (원 커머스 플라자)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뉴욕시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55 Hanson Place, Room 545
Brooklyn, NY
(718) 722-4544
(718) 722-2032 (팩스)

롱 아일랜드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켈룸 교육센터
887 Kellum Street
Lindenhurst, NY 11757
(631) 884-8530
(631) 884-8540 (팩스)

서부

바타비아 지소 (NYS 맹인학교)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2A Richmond Avenue
Batavia, NY 14020
(585) 344-2002
(585) 344-2422 (팩스)

비구역 단위

올버니 지소 (원 커머스 플라자)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Room 1623 One Commerce Plaza
Albany, NY 12234
(518) 473-1185
(518) 486-7693 (팩스)

요크타운 하이츠 지소 (PNW BOCES)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1950 Edgewater Street
Yorktown Heights, NY 10598
(914) 245-0010
(914) 245-2952 (팩스)

Room 1619 One Commerce Plaza
Albany, NY 12234
(518) 486-6221
(518) 486-7693 (팩스)

요크타운 하이츠 지소 (PNW BOCES)
뉴욕주 교육부
VESID 특수교육 수준 관리
1950 Edgewater Street
Yorktown Heights, NY 10598
(914) 245-0010
(914) 245-2952 (팩스)

뉴욕시 추가 조항

시한

학생이 이전에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 학교 시스템은 학부모의 동의를 수령한 때로부터 수업일 기준 60 일(여름 동안 근무일) 이내에 필요한 모든 특수교육을 평가, 추천 및 주선해야 합니다.

학생이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고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추천을 받았으면, 학교 시스템은 재검토 추천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업일 기준 60 일 (여름 동안 근무일) 이내에 필요한 모든 특수교육 서비스를 재평가, 추천 및 주선해야 합니다.

학생이 승인된 사립학교 프로그램에 출석하라는 권고를 받은 경우, 학교 시스템은 사립학교 프로그램 추천을 수령한 때로부터 추가로 최대 수업일 기준 30 일(여름 동안 근무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자녀에게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해당 학년에 동의일/추천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65 일 내 또는 새 학년 배정이 고려되는 8 월 15 일까지 최종 추천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경우, 학부모는 뉴욕시 학교 시스템의 비용 부담으로 승인된 사립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평가, 추천 및/또는 배정 과정을 부당하게 지체시키는 경우, 이 시한은 지체된 시간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독립 교육 평가

학부모는 본 통지문의 평가 섹션에 기술된 바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독립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독립평가는 뉴욕시 헌장 (City Charter) 제 68 장에 수록된 이해상충법 (Conflicts of Interest Law)에 따라 교육청 직원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교육부

절차적 보호 통지문

연령 3-21세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의 권리

진급 기준

뉴욕시 교육청은 3 학년에서 12 학년까지 학생의 진급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체계적인 진급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장애학생 모두 이러한 진급 정책의 대상자입니다. 단, 학생의 IEP 가 뉴욕주 및 뉴욕시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학생은 예외입니다. 뉴욕주 및 뉴욕시 평가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의 진급 기준은 IEP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학생의 IEP 에 명시됩니다.

추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교사와 만나 자녀의 성적표, IEP 진척 보고서 및 자녀가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하여 의논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회의에서 자녀의 특수교육 교사를 만날 수 없으면, 컨퍼런스때 제공하는 통지문에 이러한 사실을 체크하여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추계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성적표, IEP 진척 보고서 및 자녀가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관하여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부모가 원하는 언어로 자녀의 IEP 및 IEP 진척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3-8 학년에 재학 중이고 자녀가 진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6 월에 받을 경우, 우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수업일 기준 3 일 내에 학교장에게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장은 학부모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3 일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는 교장의 결정이 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령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3 일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매년 자녀의 IEP 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때, 학부모는 언제든 IEP 팀을 재소집 하여 자녀의 IEP, IEP 에 진술된 진급 기준 및 자녀가 받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